
	규정	문서번호	TWP-B220	
		제정일자	2018. 07. 09.	
	대학홍보 위원회 규정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페이지	1/4

작성부서	입학홍보처	제정일자	2018. 07. 09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담 당	입학홍보처장	기획처장	교무처장	총 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B220	
		제정일자	2018. 07. 09.	
	<b>대학홍보 위원회 규정</b>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페이지	3/4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교·내외 홍보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홍보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)를 설치,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대학홍보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
2. 대내 외 홍보자료의 발굴, 수집, 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사항
3. 대학홍보와 관련한 책자, 영상제작 등 홍보물에 관한사항
4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4조(회의)**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**제5조(전문위원)**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의 전문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.

**제6조(의사 및 의결)**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7조(위원회의 사무처리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.

**제8조(회의록 작성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,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한다.

**제9조(준용)**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